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6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한준호 · 전종덕  
손 솔 · 김종민 · 정혜경  
김준형 · 임미애 · 한창민  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. 하지만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.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,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.

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(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).

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